
Policy and Law Report _Vol.19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8.21.~8.27.) -

August 28, 202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 ④ 본회의의 주요 통과 법안 (2023. 8. 24.)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5. 지난 주(8/21~8/27)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사업”이 총 4,407.3억원(국비 3,731.7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보도자료 ('23.8.23.(수)) 참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2021년부터 추진 중인 6G 원천기술 연구와 연계하여 2024년부터 6G 상용화기술 및 핵심부품 개발을 본격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2026년 Pre-6G 기술 시연, 6G 국제표준특허 30% 확보 등 우리나라가 차세대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임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해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6G 기술개발 투자가 확대됐을 뿐 아니라 신규 6G 후보주파수대역 발굴 및 가속화·개방화로의 네트워크 패러다임 전환 등 6G 기술 추세도 급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여 ① Upper-mid 대역(7~24GHz) 기술, ② 커버리지 확대 기술, ③ 소프트웨어(SW) 중심 네트워크, ④ 에너지 절감, ⑤ 공급망 안보 강화 등 5대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을 추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5G에서 3.5GHz의 용량 한계와 28GHz의 커버리지 한계를 극복하는 Upper-mid 대역(7~24GHz) 기술 개발 -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퀄컴, 에릭슨, 노키아 등 세계적인 통신장비 제조사가 6G 후보주파수 대역으로 해당 주파수 대역을 주목하고 있어, 이 대역을 바탕으로 부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2023-08-23

부처	내용	일시
	- 특히, 5G 핵심부품으로 꼽히는 ‘대용량 다출입 안테나 기술(massive MIMO)’ 대비 4배 이상 성능을 향상시킨 ‘초대용량 다출입 안테나 기술(E-MIMO: Extreme Massive MIMO)’과 이러한 안테나 부품을 제어하는 IC칩을 개발하여 우리나라가 6G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기여할 계획임 ② 높은 주파수 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커버리지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 개발 - 수동형 중계 기술을 토대로 한 현재의 기지국은 주변 고정된 범위의 지상 위주 통신만 가능하여 음영지역이 발생하고 있는데, 6G에서는 능동형 중계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넓은 범위까지 통신이 가능하게 할 계획임 - 이 기술을 활용할 경우 상용화 초기에 발생하는 커버리지에 대한 불편함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③ 하드웨어(HW) 중심에서 클라우드·SW로 전환되는 네트워크 변화에 대응하여 SW 중심 네트워크 기술 개발 - SW화가 일부 진행된 5G 모바일 코어 기능을 유연성·고가용성·고성능을 갖춘 Cloud 기반 모바일 코어망 SW(Cloud-Native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기지국 장비도 가상화·개방화·지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SW기술을 Cloud를 활용하여 개발 ④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선언 및 주요국의 6G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과 연계하여 더 높은 성능을 지원하면서 에너지도 절감하는 기술 개발 - 6G는 5G 대비 전반적인 시스템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력 소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통신시스템에서 전력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지국(약 73%)의 핵심부품의 저전력 설계 및 저전력 신호처리 기술 등을 개발하고, 코어망 네트워크 관리 기술도 고도화하여 전체 통신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임	

부처	내용	일시
	⑤ 우리나라가 대부분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기지국, 단말, 광통신 등의 핵심부품*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통신장비·부품의 공급망 강화 *현재, 기지국 장비 內 고가 RF 핵심부품은 외산이 주류이며, 단말도 RF 관련 핵심부품은 美·日이 95% 이상 시장을 점유, 광원소자 등은 전량 수입 중 -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공급기업인 중견·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수요처의 요구수준-개발기술 간 격차를 줄일 것임 - 이를 통해 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내 기술이 활용된 부품의 시장 출시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임	
금융감독원	•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3.50%)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G2(美·中)發 불안요인이 향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美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대두되는 가운데, 美 지역은행의 신용등급 강등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건전성 관리가 중요 - 가계대출 확대 고금리 특판예금 취급 등 외형경쟁을 자제하고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 - 美 금리 상승 등에 따라 국내 금융사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해외 유가증권의 건전성 현황 및 외화 자금조달 여건을 면밀히 점검 ② 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국내 금융사의 직접적인 익스포저는 미미*하나, 중국 경기 회복 지연이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 * 총 대외 익스포저의 0.1% 수준에 불과 -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ELS 발행 현황과 증권사 외화증거금 수요 확대 등 중국 증시 불안 지속시 발생가능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점검 강화 - 중국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對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수출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수출기업의 금융애로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비 * 對중국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4월)△26.5% (5월)△21.1% (6월)△19.0% (7월)△25.1%	2023-08-24
국무조정실	•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6개 킬러규제* 개선방안 추진 정부는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기업의 투자와 사업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여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6개 킬러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함 * ①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②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③ 환경영향평가 규제, ④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⑤ 외국인 고용규제, ⑥ 산업안전 규제	2023-08-24

부처	내용	일시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단 입지규제 해소) 30년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 전환, 노후화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 - 제조업 중심 산단에 첨단·신산업 입주 허용 - 입주업종 대상여부 판단을 표준산업분류표가 아닌 전문가가 신속·합리적으로 결정 - 카페·체육관 등 문화·여가시설 설치가능 면적 대폭 확대 (3만→최대 10만㎡) ② (환경규제 혁파)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환경규제 혁파 - EU수준 맞게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0.1t→1t) 등 → 3,000억원 비용절감 (~'30) - 업종특성 고려가 필요한 디스플레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별도로 제정 등 → 8.5조원 경제효과 (~'30) - 첨단산단 신설에 따른 용수공급문제 해소 등 → 15개 첨단산단 조기준공 지원 ③ (고용규제 개선)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일자리가 21.3만개에 달하는 상황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규제혁신 - (외국인력 도입 확대) 전문인력 확보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2천→3만5천명 전환 규모 확대, 외국인력 쿼터 확대 ('23.4Q 3만명에서 1만명 추가 등) - (규모·업종별 외국인력 활용) 규모기업별 수요를 반영하여 활용인원 2배 확대, 업종택배 상·하차 직종 허용, 관광숙박분야 활용방안 검토 - (유학생) 졸업후 3년간 취업 전면허용, 첨단분야 우수인재 가족 취업허용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행정 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8.22. 시행)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의 범위’에서 ‘연 12회의 범위’로 조정하며,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일반재산 수탁기관으로 정하고,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는 사용료·대부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3조제3항제11호, 제14조제1항, 제17조제5항, 제29조제1항제16호,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5호 신설 등)	2023-08-22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8.22. 시행)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기한 전 징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사업의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이 계속되어 재활용부과금의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28조제5항 신설,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35조의2제1항, 제48조제3항 등)	2023-08-22
국토 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8.22. 시행)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등으로 하여금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하는 한편,	2023-08-22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제공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였던 자들의 주택 공급 순위를 4순위에서 1순위 또는 2순위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별표 1 제1호사목, 별표 2 제2호가목, 별표 2 제3호)	
금융 위원회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9.22. 시행 예정) 은행이 은행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9261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 이에 따라, 은행업의 중요한 일부의 폐업을 폐업하려는 은행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은행업무 또는 겸영업무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부수업무 일부의 양도·양수도 인가의 대상 범위에 추가하면서, 양도·양수하려는 은행업무 등의 자산 또는 영업이익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양도·양수 인가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제24조의2, 제24조의9제5항, 별표 4 제2호하목)	2023-08-22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법무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소집, 결의, 진행을 포괄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하여 상법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여 주주권 보장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주요 사업부의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한 이후에도 채권자로서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금도 교부받는 등의 체계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식매매대금에 대해 회사의 공탁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여 주주보호 강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소수주주 주식 매수도청구 관련 규정 정비 및 공탁제도 도입 (안 제335조의5, 제335조의6, 제360조의24 및 제360조의25) - 주주가 주장하는 가액 중 일부 또는 지배주주가 주주총회 소집 시 통지하는 매매가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회사 또는 지배주주의 공탁을 허용함으로써 공탁한 범위에서 회사의 지연손해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함 - 지배주주가 매도청구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 통지하는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자료를 본점에 비치하게 하고, 소수주주에게 동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부여함 ②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한 주주 동의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 외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을 명문화함 (안 제363조제1항) ③ 정관상 근거가 있는 경우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주주가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4조의2 등) ④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정비 (안 제368조) -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을 서면 외에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함 -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현장주주총회 또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함 ⑤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관련 규정 정비 (안 제368조의3, 제368조의4) -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투표 제도 도입 요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서면투표 제도 도입 요건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규정함 - 서면투표와 전자투표가 사전투표임을 명확히 규정함	2023-08-2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⑥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관련 규정 신설 (안 제368조의5) -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통한 주주총회 운영 및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인하여 결의 방법에 흠이 생긴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제기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⑦ 전자주주총회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신설 (안 제368조의6 등) -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가 어느 한쪽의 주주총회에만 출석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함 - 전자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함 ⑧ 기업 구조변경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정비 (안 제374조제2항 및 제3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6항 등) -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의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주식매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반대주주가 채권자 지위만을 보유하게 됨을 명시함 - 회사가 기업 구조변경의 효력발생일까지 반대주주에 명시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 명시가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회사의 공탁을 허용하여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함 - 구조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명시가액 및 그 산정근거를 제공하게 하고, 주주에게 동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함 ⑨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안 제530조의12제2항) - 상법상 물적분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도입함 ※ 의견 제시기간 :2023/8/24(목)~10/4(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법무부(상사법무과)로 제출	
환경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개정, 2024. 1. 4. 시행)됨 이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023-08-2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처리, 위임·위탁 등 근거 마련 (안 제21조, 제22조 및 제31조) -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를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접수 업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위임하고, 법 제4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 접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②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및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별표6) -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및 법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600만원, 2회 위반 시 8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 ※ 의견 제시기간 :2023/8/25(금)~10/24(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로 제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개정, 2024. 1. 4. 시행)됨 이에 따라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절차와 수수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 양도 시 등록번호·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3-08-2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화학물질 양도 시 정보전달 자료 간소화 (안 제36조제1항) - 현행 규정은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등록번호·신고번호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등록번호·신고번호를 대신하여 등록·신고 여부를 기재토록 개선함 ②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도입 등 (안 제42조 신설)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및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자나 위탁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를 하도록 변경신고의 사유를 추가함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30% 이내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도록 함 ③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와 관련한 절차 규정 (안 제55조의3 신설) -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가 합병한 경우,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 ④ 중점관리물질 신고·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수료 규정 보완 (안 별표11) - 현행 50,000원인 중점관리물질 신고 수수료를 20,000원으로 조정하고,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수수료와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수료를 각각 15,000원, 2,000원으로 책정함 ※ 의견 제시기간 :2023/8/25(금)~10/24(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로 제출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치도록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변경협의 절차 등을 합리화하고, 초급 평가자의 자격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의 타당성 검토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안 제3조제2호 및 안 제26조제2항) -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면 환경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②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증가 판단시 최소 지역범위 적용 (안 제20조, 안 제28조제1항제1호, 안 제29조제1항제3호)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 및 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변경협의, 재협의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규모의 증가 비율을 판단할 때 최소 지역범위 내에서 증가되는 규모로 한정하여 판단하도록 함 ③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합리화 (안 제5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변경시 협의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을 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협의 내용에 반영된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한 환경보전방안 등 서류를 제출하면 승인기관장은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장에게 의견을 요청하도록 함 ④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합리화 (안 제63조의2제1항)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중 규모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지 10년 이내의 증가한 규모로 한정하고, 부지면적의 30%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중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함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신규 추가 및 정비 (안 별표 2)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를 설치하려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함 ⑥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하천·하천기본계획 추가 (안 별표 2의2) - 신속한 재해예방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소하천·하천기본계획을 협의와 의견수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함	2023-08-2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⑦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적용시기 합리화 (안 별표 3 제3호 및 제15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 등의 환경영향평가대상 적용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같이 현행 1만킬로와트 이상에서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하며,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매립시설과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적용기준을 구분하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를 “변경허가 전”으로 명확히 함 ⑧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화 (안 별표 4 비고4 및 비고11)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친수지구로 지정된 하천구역에서의 환경오염배출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농지 개발·보전 사업,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연접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 기준을 합리화함 ⑨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합리화 (안 별표 5의2) -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초급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자격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을 합리화함 ※ 의견 제시기간 :2023/8/25(금)~10/4(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	
국토 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화구획의 시공관리 기준 및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강화하고, 내부마감재료 기준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0호)」 개정 추진 중 누락된 조문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관리 강화 (안 제18조의2제2항) - 방화구획은 화염 등의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구조이나, 준공검사 시 적절하게 시공되었는지 육안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시 시공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시공관리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② 대피공간 출입문에 60+ 방화문 설치 (안 제46조제4항) - 기존에 갑종·을종으로 구분하던 방화문 분류체계를 성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0호)」 개정안 중 대피공간 출입문에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문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023-08-22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③ 내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대상 명확화 및 확대 (안 제61조제1항) -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 되어있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이 제외되나,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 내부 마감재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화하고 내부마감재료 적용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까지 확대하고자 함 ※ 의견 제시기간 :2023/8/22(화)~10/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로 제출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9416호, 2023. 5. 16., 일부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 설정 (안 제11조의14 신설)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을 준용하여 규정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필요한 누적 투자금액 및 마지막 투자금액은 각각 100억원, 50억원으로 설정 ② 대기업 집단 포함 시 보통주 전환 규정 (안 제11조의15 신설)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규정 -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시 주주 전원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 ③ 복수의결권주식 발행·변경 보고 시 보고사항(보고서,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을 규정하고,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규정 (안 제11조의16 신설) ④ 행정권한 및 절차 규정 (안 제11조의17 및 안 제22조 신설)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준용 - 복수의결권주식 보고·변경보고 지연 등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별표 3】 ※ 의견 제시기간 :2023/8/21(월)~9/30(토)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벤처정책과)로 제출	2023-08-2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9416호, 2023. 5. 16., 일부개정)의 후속 조치로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보고 및 변경보고 신고 서식 규정 (안 제6조) ※ 의견 제시기간 :2023/8/21(월)~9/30(토)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벤처정책과)로 제출	2023-08-21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504호, 2023. 6. 20.,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및 운용,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투자 규제 개선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투자실적의 범위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반영 (안 제4조제1호) -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한 투자를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실적 범위에 반영 ② 조문 정비 (안 제4조제2호,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13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제5항, 제30조제1호 등)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결격사유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의 범위 명시 및 조문 정비 -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요건 중 차입 비중(20% 미만) 산정기준 명확화 - 유한(책임)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허용에 따른 용어 정비 ③ 개인투자조합의 공시기준 (안 제12조의2) -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의 기준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의 합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로 금액기준을 제시 ④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겸영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완화 (안 제17조제3호)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겸영 창업기획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것을 허용 ⑤ 특수목적펀드의 출자·투자의무 완화 (안 제35조) - M&A, 세컨더리 등 특수목적펀드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미적용 - M&A 목적 펀드의 상장 법인 투자제한 비율을 20%에서 60%로 완화 -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M&A, 세컨더리, 지분유동화 등 특수목적펀드의 범위 명시	2023-08-2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⑥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재산운용 기준 (안 제35조의2) - 투자목적회사의 창업·벤처기업 투자 의무 비율을 60%로 규정 - 투자목적회사 투자비율 산정기준 명확화 - M&A 목적 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출자 비율을 60% 이상으로 완화 - M&A 목적 펀드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피인수·합병 법인 임원 및 대주주 등 지분 참여 허용 - 단일 기업·사업 투자, 차입한도 등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및 재산운용 세부사항 명시 ⑦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의 참여 주체 및 신고사항 (안 제44조의2) -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기금관리기관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명시 -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코넥스 상장 법인 추가 -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의 분기별 신고사항 규정 - 융자기관과 심사자료를 공유하는 투자기관 범위에 벤처투자조합 주요 결성주체와 개인투자조합 추가 ⑧ 투자조건부 융자에 관한 자료의 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안 제48조제2항제10호) - 한국벤처투자 위탁 업무에 투자조건부 융자 신고자료 관리 추가 ※ 의견 제시기간 :2023/8/23(수)~10/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벤처정책과)로 제출	2023-08-23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504호, 2023. 6. 20.,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투자목적회사 등록·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선진 벤처금융기법 운용 및 관리 기준 구체화 (안 제3조의2, 제7조제1호, 제24조제2항, 별지 제11호·제12호서식) -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으로 후속투자의 기업가치와 지분 전환 조건 연동, 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 명시 - 조건부지분전환계약시 후속투자 여부에 따른 원리금 상환 의무 규정 - 조건부지분전환계약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 계약 체결 이후 타 계약당사자 고지 의무 부여 - 조건부지분전환 계약 체결을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실적 인정 범위에 추가 - 투자목적회사 설립·차입·청산 및 주주·사원 변동시 벤처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 의무 부여 - 등록신청 첨부서류 및 등록원부 기재사항에 투자목적회사 관련사항 추가	2023-08-2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조문 정비 (안 제15조, 제18조, 제24조제3항·제4항·제5항 등)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 유한(책임)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허용에 따른 용어 정비 -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 ③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 간소화 (현행 제24조제1항 삭제) - 벤처투자조합 등록 전 단계의 결성계획 제출·승인 절차 폐지 ※ 의견 제시기간 :2023/8/23(수)~10/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벤처정책과)로 제출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외제조업소 및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근거 및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대한 위임의 근거가 마련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등록증의 훼손·분실, 위변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자영업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간 영업등록 변경 및 신고 등에 영업등록증 원본을 반드시 제출토록 하던 것을 영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영업등록증의 경우는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해외제조업소 등록 연장 및 제한규정 마련에 따른 정비 (안 제2조, 제3조의5, 제12조) ②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 절차 마련 (안 제4조) ③ 수입중단 해제근거 명확화에 따른 정비 (안 제4조) ④ 수입식품 전자 영업등록증 도입 (안 제 16조, 제18조, 제21조) ⑤ 통관단계 부적합 식품의 용도전환 범위 확대 (안 제34조) ⑥ 수출식품 위생증명서 신청 제출서류 인정범위 확대 (안 별표 14) ※ 의견 제시기간 :2023/8/21(월)~10/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로 제출	2023-08-2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광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어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행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처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성분에 대한 표시·광고 예외 규정 마련 (안 별표 1 단서 신설) ② 영양성분 표시의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 (안 별표 3) ※ 의견 제시기간 :2023/8/24(목)~10/4(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로 제출	2023-08-24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과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당알코올 함유 제품을 과량 섭취 시의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고 표시사항이 서로 겹쳐 표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현행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업자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조·가공업자 외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단하도록 광고시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당알코올 함유 제품의 주의사항 표시방법 개선 (안 별표 2) ② 식품등의 표시방법 명확화 (안 제5조, 제6조, 제7조 및 별표 3) ③ 부당 광고 등 즉시 중지 대상 확대 (안 별표 6) ④ 소비기한 초과 표시 행정처분 대상 규정 명확화 (안 별표 7)	2023-08-2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2023/8/24(목)~10/4(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근거 및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0호, 2023. 6. 20. 공포, 2023. 12. 21. 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 확대 (안 제48조) - 법 개정으로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법령 체계 유지를 위하여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도 이에 상응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고, 입찰정보 제출을 조달청의 조달시스템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의 업무 편의성도 제고하고자 함 -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에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입찰정보 제출이 가능하게 함 ②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 (안 제68조) - 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함 ③ 시정조치 이행관리 위탁 절차 마련 (안 제83조의2 신설) - 법 개정으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고,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위탁 관련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 의견 제시기간 :2023/8/25(금)~10/4(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로 제출	2023-08-2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 집행을 위한 지자체의 정보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3.3월, '24.3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요구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용도·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의 적용대상 확대 (안 제29조제2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한이 지자체에게 부여되면서, 제출받은 자료의 용도·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공정위 뿐 아니라 지자체에게도 부과 - 공정위 및 지자체의 자료제출요청 대상을 기존의 기관 및 단체뿐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하고,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적용 ② “시·도지사” 자구 수정 (안 제32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문구를 축약어(“시·도지사”)로 같음 ※ 의견 제시기간 :2023/8/25(금)~10/4(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로 제출	2023-08-25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23.2.14. 공포, 2023.2.14. 시행)으로 동의의결 절차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제90조 및 제91조)을 준용하게 됨 이에 따라 시행령에 이행관리 위탁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을 명시하고,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內 위반행위 조항을 공정거래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기준 조정 (안 제14조) - 법 제9조제1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3-08-2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매출액이 없는 등의 기준으로 1)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를 삭제하고, 2)매출액 산정자료가 재해 등으로 훼손·소멸되어 객관적인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 3)위반기간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추가함 ② 동의를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규정 마련 (안 제16조의5 신설) - 개정 법률(제7조2의제5항)이 동의를결 이행관리 업무위탁에 대해 공정거래법 규정(제90조제7항)을 준용(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위탁)함에 따라 시행령상 위탁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동의를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업무, 이행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함 ③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內 위반행위 조항 정비 ([별표2])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內 위반행위 조항을 現 공정거래법 조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법 제66조, 제8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2항, 제3항 및 제6항으로 정비함 ※ 의견 제시기간 :2023/8/25(금)~10/4(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로 제출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속한 집단분쟁 해결을 위하여 집단분쟁의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또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 완화 (안 제56조) - 최근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기존 법령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이어야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개정안에서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함 ②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 (안 제62조의2) - 법 개정 이전에는 분쟁조정 중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종료하여야 했으나, 개정된 법(제68조의4 신설, 2023.6.20. 공포)은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受訴法院)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임 -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 조정 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함	2023-08-2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2023/8/25(금)~10/4(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로 제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약관법이 개정(’23.6.20. 공포, ’23.12.21. 시행)됨에 따라,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요구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이를 통지하고(안 제8조의8제1항), 협의회는 조정절차 진행 (동조 제3항) - 소송절차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법 취지에 맞추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소송중지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 부과 - 협의회는 위와 같은 소송중지 사실을 통지받으면 조정절차를 진행함 ②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 (안 제8조의8제2항) - 수소법원이 소송절차 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결합된 경우에 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성명·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분쟁조정 신청일,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를 알려야 할 의무 부과 ③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조정 결과가 도출되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결과 통지 (안 제8조의9제3항) - 조정이 각하되거나 종료됨으로써 조정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수소법원이 그 사실을 알고 소송절차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수소법원에 그러한 각하·종료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 부과 ※ 의견 제시기간 :2023/8/25(금)~10/4(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로 제출	2023-08-25
특허청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별로 긴급처리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우선심사의 대상을 정비하는 한편	2023-08-2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특허청	특허법 개정(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 및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에 따라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을 정비하고 새로 도입된 분리출원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특허공보 게재사항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우선심사의 대상 정비 (안 제9조) - 우선심사의 대상에서 긴급처리 필요성이 떨어지는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의뢰 우선심사(제1항제11호), 65세 이상인 사람 및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는 사람의 우선심사(제1항제12호가목 및 나목)를 삭제 -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관련된 우선심사(제2항제1호나목)의 근거법을 현행화함 ②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정비 (안 제7조의2) - 개정된 특허법 제10조에 따라 ‘개임 명령’을 ‘교체 명령’으로 어려운 용어를 순화함 (제1항제1호가목) - 개정된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대상이 ‘특허거절결정된 출원’뿐만 아니라 ‘특허결정된 출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특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일까지의 기간을 추가함 (제1항제1호하목)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중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 관련된 기간으로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해 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만큼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 관련된 기간으로서 특허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심판청구일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 (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1호너목 신설) ③ 특허공보 게재사항 정비 (안 제19조) - 특허공보에 개정된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제2항제4호 및 제3항제7호) ※ 의견 제시기간 :2023/8/24(목)~10/4(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특허청(특허제도과)로 제출	2023-08-24
	•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별로 긴급처리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우선심사의 대상을 정비하는 한편	2023-08-2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실용신안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개정(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 및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에 따라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을 정비하고, 새로 도입된 분리출원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우선심사의 대상 정비 (안 제5조) - 우선심사의 대상에서 긴급처리 필요성이 떨어지는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의뢰 우선심사(제12호), 65세 이상인 사람 및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는 사람의 우선심사(제13호가목 및 나목)를 삭제함 ②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정비 (안 제6조의2) - 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개정된 특허법 제10조에 따라 ‘개임 명령’을 ‘교체 명령’으로 어려운 용어를 순화함 (제1항제1호가목) -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개정된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대상이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된 출원’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등록결정된 출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실용신안등록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재심사에 따른 실용신안등록 여부결정일까지의 기간을 추가함 (제1항제1호하목) -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중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 관련된 기간으로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해 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만큼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 17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 관련된 기간으로서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심판청구일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 (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1호너목 신설) ③ 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 정비 (안 제7조) - 실용신안공보에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개정된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 ※ 의견 제시기간 :2023/8/24(목)~10/4(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특허청(특허제도과)로 제출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발의일자
정무위원회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의원 등 11인)</u>」 현행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함으로써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을 때 변호인도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피조사자 등이 변호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내용뿐 아니라 변론 전략이 담긴 문서 등을 제출받거나 일시보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피조사자 등이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향후 조사,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면 조사대상자는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불충분한 법적 조력으로 귀결됨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비밀유지권 침해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 특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시보관은 법원 등 제3의 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아 더 무분별하게 비밀유지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과 피조사자 등 간 의사교환 내용 등에 관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안 제83조 및 안 제127조의2 신설)	2023-08-21
	• 「<u>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u>」 현행법에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가 내부감사기구에게만 있고, 감사인이나 내부감사기구가 통보나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해마다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하는 사례가 200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내부감사기구가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사례는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2023-08-22

소관부처	법률안	발의일자
	이에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이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2조 및 제47조 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1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은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기관경고·기관주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는 각 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영업정지’의 행정제재는 부과하고 있으나, 기관경고·기관주의에 대한 제재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해 위반동기 및 위반결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행정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입법불비를 해소하고 행정제재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경우에 기관경고·기관주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인경고 등의 개인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안 제13조제6항) 한편, 가지조문을 인용하거나 준용하는 경우 가지조문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나 현행법은 대부업자등의 영업정지 사유에 채권추심법을 인용하면서 일부 가지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3조제1항제1호)	2023-08-22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온라인플랫폼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입점업체 차별’ 등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고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등 전형적인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심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온라인플랫폼시장에는 적합하지 않아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2023-08-23

소관부처	법률안	발의일자
	이에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억제하되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의 목적을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 확장을 억제함과 아울러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공정경쟁 촉진과 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선순환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안 제1조) ② “온라인플랫폼시장”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플랫폼서비스가 거래되거나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등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들 간의 거래,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온라인 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서비스,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서비스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함 (안 제2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공표하도록 함 (안 제6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안 제7조) ⑤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연평균 매출액 1조원 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안 제8조)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안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안 제9조) ⑦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안 제10조) ⑧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행위, 보복조치행위, 탈법행위를 금지함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⑨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 (안 제18조) ⑩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주식 취득, 영업 양수, 합병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경쟁 제한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함 (안 제19조) ⑪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2년마다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경쟁촉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20조)	

소관부처	법률안	발의일자
	⑫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21조 및 제22조) 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위반행위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부당한 차별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 ⑮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 내용의 자발적 해소,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또는 거래질서 개선 등을 위한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안 제28조) ⑯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부당한 차별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탈법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면서 피해자가 결함 및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제조물 특성상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여전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소송 과정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극적 운용,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 불이행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나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실기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023-08-25

소관부처	법률안	발의일자
	아울러 자료제출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시정·보완하고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손해의 증명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훼손하는 등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의2 신설) ②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되어야 할 자료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의3 신설) ③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상대방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 신설)	2023-08-10
기획재정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사업자등”이라 함)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현금영수증사업자등이 현금영수증을 결제·발급한 건수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건수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환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한을 두어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그런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사업자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발급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임에도 해당 사업에서는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금영수증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사업자등에 대한 실비보상적 지원을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현금영수증사업자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26조의3제1항 및 제2항)	2023-08-21

소관부처	법률안	발의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필모의원 등 15인)」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양상이 다양해지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새로운 권리침해 유형으로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권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만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이용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이용자 보호의 원칙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권리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②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 검색 또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노출 순서·방식 등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③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8조) ④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 ⑤ 이용자가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이거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⑥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를 기만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이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약관 등과 다르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함(안 제26조)	2023-08-23

소관부처	법률안	발의일자
	⑦ 사실조사의 대상이 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었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어 사실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이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	
	•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1인)</u>」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公衆)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현행법상의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 및 제72조)	2023-08-24
	•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3인)</u>」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을 전시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고, 청소년 또한 마약류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마약류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마약류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 (안 제41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7)	2023-08-25

소관부처	법률안	발의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수소경제 이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과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에너지인 수소분야의 기술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기술이 아닌 진보된 新기술로써 전문적으로 수소기술을 진단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보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생산부터 이용까지의 수소기술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행할 수 있는 수소기술원을 설립해 정책 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33조의2 신설)	2023-08-22
	•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24인)」 생활소비재산업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산업임 최근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심미성 · 상징성 · 자기만족과 같은 주관적 욕구 충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생활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신흥국의 성장과 한류 확산 등의 영향으로 해외시장 규모도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 또한 기존의 생활소비재산업이 새로운 IT기술, 콘텐츠, 첨단소재, 디자인 등과 융합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생활소비재산업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가격과 수익이 점차 낮아지는 등 산업의 수명주기상 성숙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고, 개도국의 중저가품과 대비할 때는 가격 경쟁력에서, 선진국의 고가품과 대비할 때는 품질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샌드위치 신세에 직면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도약 혹은 쇠퇴라는 갈림길에 선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을 창의적이고 신선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절실한 시점임 이에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 추진하고, 생활소비재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023-08-23

소관부처	법률안	발의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6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안 제7조 및 제8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산업통계를 확보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생활소비재산업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안 제9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생활소비재를 지정할 수 있고 우수생활소비재의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0조 및 제11조)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인력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안 제12조 및 제13조)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기업의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그리고 생활소비재기업·산업의 첨단화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보건복지위원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 단축에 용이하고, 약국에서 조제를 위해 처방정보를 입력 시 시간 단축뿐 아니라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병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자처방전 활용이 미비함. 또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전자처방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유관 단체들이 모여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출범해 회의를 진행해왔으나 지난 2022년 6월 이후 회의가 중단되며 전자처방전에 관한 논의 역시 중단된 상황임	2023-08-21

소관부처	법률안	발의일자
	이미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정부가 전자처방전 달시스템을 구축 또는 인증하고 전자처방 확대 정책 시행 중임 이에 처방전전자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8조의3 신설 등)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사유로 인해 농수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한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안 제90조의2)	2023-08-24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은 신고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해서는 아니되나, 제조·가공업체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주체임에도 용도변경 신청이 불가능하고, 외화획득용으로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임에도 폐기되는 등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도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획득용 원료도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15조 및 제20조)	2023-08-25

소관부처	법률안	발의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조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4항 신설 등)	2023 08-21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등 10인)」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및 현행법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위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및 위원 자격요건에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관련 사항을 삭제함 (안 제6조) ②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48조의2) ③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 운영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48조의3)	2023 08-22

소관부처	법률안	발의일자
	④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의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 (안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 ⑤ 구제급여 지급중단 결정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48조의9) ⑥ 재심사 청구 등 구제급여 재심사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 (안 제48조의13) ⑦ 구제급여 대상자에 대한 진찰요구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48조의17) ⑧ 구제급여 지급 일시 중지 결정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48조의18) ⑨ 환경부장관 위탁 사항 수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 위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54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그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오염과 관련된 피해인정·구제제도 및 분쟁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의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운영 중임 그런데 위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환경책임보험의 약정과 보험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결정 주체를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18조 및 제19조) ②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관련 심의·결정 기구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폐지하고,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심의·결정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2023-08-22

소관부처	법률안	발의일자
	③ 환경권보호위원회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존에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심사·재심사청구를 하도록 한 것을 환경권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 하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변경함 (안 제28조 및 제30조) ④ 환경부장관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절차가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재심사 절차로 변경됨에 따라 그 심의기관인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 (안 제29조 및 제31조 삭제) ⑤ 환경책임보험 보장계약 체결, 구제급여 지급 등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업무 일부를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4조제4항 신설)	
	• 「<u>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등 10인)</u>」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이 법에 따른 허용기준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물질의 독성, 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을 심사·평가한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규칙은 입자상물질, 일산화탄소 등의 물질을 대기오염물질로 열거하고 있음 이 중 ‘입자상물질’은 배출 당시 고체·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여과성 물질(Filterable Particulate Matter: FPM)과 배출 당시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배출 즉시 응축되는 응축성 물질(Condensable Particulate Matter : CPM)로 구분됨. 그러나 환경부는 현재 이 중 여과성 물질만을 측정하고 있어 응축성 물질에 대하여는 그 관리·규제가 미흡한 실정임 그러나 대표적인 응축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화력발전소·열병합발전소의 배출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되는 ‘백연’을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이나 내분비계통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축성 물질에 대한 연구·조사 및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물질에 응축성 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응축성 물질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여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6호 후단 및 제7조제2항 신설 등)	2023-08-23

소관부처	법률안	발의일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커피전문점 등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제품 가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부장관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동 지역)에 한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우선 지정 지역의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외 지역은 3년 내에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고시하였음 그러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1회용 컵 보증금의 적용 대상 사업자는 가맹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상당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테이크아웃 및 저가제품 전문매장 등 규모가 작을수록 더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1회용 컵 보증금 적용 대상 사업자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로 국한함에 따라 같은 제품(음료류)을 판매 중인 미적용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부담과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현행법상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전국의 적용대상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을 가져올 것이므로 적용 여부 결정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제도 적용 가능성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지역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지정 등 제도 시행 여부를 조례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시행과 함께 1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기 사용 확대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법의 목적 달성과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개정 및 제15조의7 신설)	2023-08-25

④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3. 8. 24.)

소관부처	처리법안 및 주요내용
정무 위원회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안」(수정,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 인허가 의제 및 이의신청에 관한 법률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함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반영 법률안 : 7건 (전재수·송재호·이정문·박재호·윤한홍·김종민·강민국의원 대표발의) ◦ 규제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함 ◦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별도관리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함
교육 위원회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동용의원 대표발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함
행정안전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 외에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송재호·김도읍·문진석의원 대표발의) ◦ 지방의회로 하여금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의원당선인에 대하여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도가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

소관부처	처리법안 및 주요내용
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이개호·이병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대상 직에 교육감을 추가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점검 시행 의무를 부과함 ◦ 노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시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대안) *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이병훈·김윤덕·이용호의원 대표발의) ◦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전통문화상품의 표준화 추진 및 품질관리, 창업 및 제작 지원,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를 규정함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수정,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 근현대문화유산 개념을 도입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원칙을 정립함 ◦ 근현대문화유산 중 50년 미만인 현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예비문화재 제도를 도입함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이용의원 대표발의) ◦ 건조물에 싸여진 유형문화재를 매장문화재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동법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에 관한 절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이병훈·이용의원 대표발의) ◦ 등록문화재의 정의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함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소관부처	처리법안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시행계획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해 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을 마련함
	•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이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장의 임명 기준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며, 법률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대안반영 법률안 : 5건 (김승남 · 박홍근 · 정희용 · 이달곤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신발·손 소독 등을 위한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로 재분류하여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이개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추가함 ◦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항목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함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 해양안전심판원의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자격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동일하게 함 ◦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소관부처	처리법안 및 주요내용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배준영·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함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만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함 ◦ 해안폐기물을 수거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 산업부장관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영순의원 대표발의) ◦ 산업부장관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벌칙에서 과태료로 변경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 온누리상품권 유통실태조사 실시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노용호의원 대표발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을 평가하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시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함

소관부처	처리법안 및 주요내용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김상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 중소기업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도록 함 ◦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 특허심판에서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이 아닌 참고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함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이장섭·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 심판청구의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특허심판에서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이 아닌 참고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함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이장섭·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 심판청구의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특허심판에서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이 아닌 참고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함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이장섭·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 심판청구의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특허심판에서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이 아닌 참고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함

소관부처	처리법안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위원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조은희·김희재·김미애의원 대표발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김성주·정춘숙의원 대표발의) ◦ 재단의 기관장인 이사장을 상근화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조명희·최연숙·강훈식의원 대표발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인 등은 예방접종 후 특정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훈련 경비를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게 함
환경노동위원회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수정,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환경부장관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물 재해 종합상황실 및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지성호의원 대표발의) ◦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확인 표지를 부착한 건축자재의 사용 의무를 부과함 ◦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개·보수 포함)하는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 및 검사 근거를 마련함 ◦ 확인 표지를 단순 미부착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2천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함

소관부처	처리법안 및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박대수·윤준병의원 대표발의) ◦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를 분양·매각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3년 내 직접 설치·운영 및 부지의 분양·매각을 미완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부지의 분양·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 환경부장관이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 및 재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토교통위원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 점자유도블록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민홍철·문진석·이현승의원 대표발의) ◦ 전기자동차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근거를 마련함 ◦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함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8/29(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9호 발간 - 유럽연합(EU)의 방위산업강화 관련 입법례	
	8/30(수)	금주의 서평 제642호 발간 - 도서명: 도둑맞은 집중력 - 저자: 요한 하리	
	8/30(수)	금주의 서평 제643호 발간 - 도서명: 그 많은 개념어는 누가 만들었을까 - 저자: 야마모토 다카미쓰	
	8/30(수)	「World&Law」 제2023-17호 발간 - 미래를 위한 공급망 실사, 지금 세계는?	
	8/31(목)	「의회·법률정보 조사목록 2022」 발간	
예산정책처	8/29(화) 10:0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인력 정책 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의정관 417호
	8/30(수) 15:00	‘양도소득세수 전망을 위한 부동산 경기 전망’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의정관 406호
	8/31(목)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4호 발간 (2023년 제3호)	
미래연구원	8/30(수) 09:00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 -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	

[별첨1] 제409회 국회(임사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운영위	8/30(수) 10:00	전체회의	- 202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 - 법안 상정, 업무보고
	8/31(목)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교육위	8/31(목) 14:00	법안소위	- 법안 심사
외통위	8/30(수)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8/31(목) 10:00	전체회의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문체위	8/30(수)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9/1(금) 13:00	전체회의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농해수위	8/30(수) 14:00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8/31(목) 10:00	전체회의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산자 중기위	8/30(수) 09:30	법안소위	-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연금특위	8/30(수) 14:00	전체회의	- 간사 선임의 건 - 민간자문위원회 중간 보고의 건
국토위	8/30(수) 10:00	전체회의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
	8/31(목)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9/1(금) 15:00	전체회의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등 안건처리
예결위	8/30(수) 10:00	전체회의	- 결산 공청회 생략의 건 -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8/31(목) 10:00	전체회의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9/1(금) 10:00	전체회의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28(월) 09:20	제8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 2023 무탄소 경영 'CF100' 성공 시나리오 찾아라	양금희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8/28(월) 10:00	노인요양시설 입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김원이·남인순 의원실, 경제정 의실천시민연합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8/28(월) 13:00	LH 부실시공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	의원회관 6간담회실
8/28(월) 14:00	기간제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갱신기대권' 법제화 방향에 대한 토론회	류호정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실
8/28(월) 14:00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노용호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8/29(화) 14:00	초기 알츠하이머병 조기발견과 의료적 치료접근 성 향상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실
8/29(화) 14:00	한전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류호정 의원실, 공공운수노조 등	의원회관 2간담회실
8/30(수) 10:0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FE로의 전환과 가능성	이인선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8/30(수) 13:30	산업경쟁력 강화, RE100! 기업에게 듣는다	이원욱·홍정민 의원실,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	의원회관 7간담회실
8/30(수) 14:00	과학기술 여성인재 활용 확대 국회포럼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8/30(수) 14:00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 문화체육 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	홍익표 의원실	윤봉길의사 기념관
8/31(목) 14:00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	김성환·김정호 의원실,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9/1(금) 09:3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소형화물차 보급 추진 방안 정책토론회	이주환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호 뉴스레터(제198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22(화) 10:00	기업존속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8/22(화) 14:00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최혜영 의원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8/22(화) 15:00	국가전략기술과 메타물질 포럼	김영식 의원실, 대한기계학회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8/23(수) 10:30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심상정·박상혁 의원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등	의원회관 3간담회실
8/23(수) 14:00	인천광역시 지역산업 인력수급과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방안 토론회	김교흥·박찬대·맹성규· 배준영·이성만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8/24(목) 14:00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통일정책 세미나] - 한반도 통일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과제	최형두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8/2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8호 발간 -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	
	8/23(수)	금주의 서평 제642호 발간 - 도서명:도둑맞은 집중력 - 저자:요한 하리	
	8/23(수)	「World&Law」 제2023-17호 발간 - 미래를 위한 공급망 실사, 지금 세계는?	
	8/24(목)	「현안, 외국에선?」 제65호 발간 - 영국과 미국의 교권확립을 위한 노력	
예산정책처	8/23(수)	「NABO 경제 동향」 8월호 발간	
입법조사처	8/21(월)	「NARS Brief」 17호 발간 - 지방소멸완화를 위한 지역산업정책 과제	
	8/22(화)	「NARS 입법·정책」 130호 발간 - 법률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방안	
	8/25(금)	「특별보고서」 1호 발간 -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지원 실태와 개선과제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중심으로	
	8/25(금)	「이슈와논점」 2132호 발간 - 반지하주택의 침수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	

5. 지난주 (8/21~8/27) 법무법인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분야	내용
8/21(월)	건설/부동산	<u>민간공사 계약금액에 전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u>
8/21(월)	조세	<u>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과 조세 특례</u>
8/25(금)	기업지배구조	<u>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상법」개정안 입법예고 안내</u>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광재 변호사	T. 02-316-1624	E. kjakim@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